

KERI Brief

사내유보금의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yunkim@keri.org)

사내유보금은 2010년대 들어 새롭게 주목받은 기업 관련 용어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경제의 활력 감소와 대비되는 막대한 크기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책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문자 그대로 기업 내부에 유보된 금액으로 해석하여 투자 등의 생산활동을 회피하고 쌓아놓은 돈 또는 현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다. 정책 수립의 근거로 이용되므로 사내유보금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와 같은 정확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사내유보금은 세금과 배당 등으로 유출한 금액을 제외한 기업의 장부상 누적 이익을 의미한다. 법률·회계상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표되는 사내유보금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합 또는 이익잉여금을 지칭하지만 이익잉여금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자본거래를 통해 발생한 자본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

동과 관계가 없으며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상법상 배당의 대상이 되지 않는 데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납입자본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정상적 기업 활동의 결과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수익성 있는 활동을 지속한다면 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하지 않는 한 기업나이에 따라 이익잉여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의 대기업들이 더 큰 규모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함에도 사내유보금과 투자 논쟁은 국내에서만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는 사내유보금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파생된다고 볼 수 있다. 사내유보금의 의미 전달과 해석에 대한 정정노력은 처음이 아니듯, 앞으로의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 개발과 같은 근본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1. 문제제기

□ 기업의 높은 사내유보금은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며 기업관련 정책 수립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음.

- 사내유보금의 증가를 고용과 투자의 정체 및 정부 재정 적자의 확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
- 2014년 세제개편안의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으며, 최근까지 법률안 개정의 제안이유로 기업의 높은 사내유보금을 지목

□ 정책제안의 기반이 되고 있음에도 사내유보금의 실제 의미와 다르게 인용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

- 투자나 재생산에 이용되는 금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내유보금과 투자는 동시에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서로 배타적으로 해석될 수 없음.
- 사내유보를 대신하는 기업의 선택은 주주 배당이고, 외국의 사내유보금 입법례 역시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부당하게 배당을 이연시키려는 주주를 가진 기업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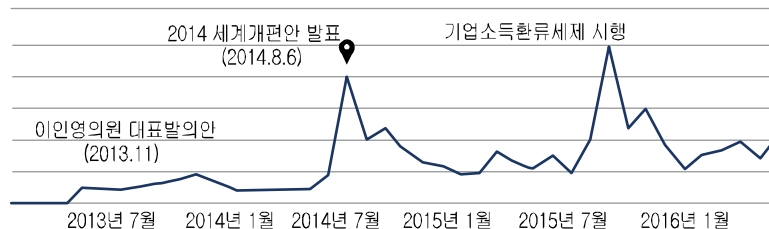
□ 본 보고서는 국내 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과 국제 비교를 통해 사내유보금의 의미를 검토하고 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사내유보금의 인용 예

□ 사내유보금은 언론계와 정치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다수의 정책제언이 사내유보금의 액수에 기반하여 제시됨.

- 한국 경제의 활력 저하 원인으로 기업의 높은 사내유보금이 지적되고 있음.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회피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내유보금의 증가를 논의함.
- 공청회와 발의안을 통해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입법 논의가 시작된 2013년부터 주목받기 시작해 2014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6월 이후 관심도가 급증하였고 현재까지 지속됨.
-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하지 않고 내부에 쌓아놓은 돈이라고 인식되어 기업내부의 idle money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그림 1〉 사내유보금 웹 검색 변화 추이



출처: 구글 트렌드(2016.6.20. 검색)

- 사내유보금은 기업관련 정책에서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고 있으며, 20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 이유에서 사내유보금을 찾을 수 있음.

- 기업소득환류세제는 3년 한시법임에도 강화하여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
- 특히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와 함께 사내유보금의 증가는 법인세 과세표준 조정과 최고세율 인상 주장의 이유로 작용¹⁾

□ **정책 및 입법의 질적 향상과 기업활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대를 위해서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필요**

3. 사내유보금의 의미

□ **회계적 또는 법률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사내유보금은 세금과 배당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유보된 금액의 누계액을 의미**

- 사내유보금이라는 회계계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상의 잉여금으로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합 또는 이익잉여금을 지칭함.

- 유보의 개념을 일반기업회계기준²⁾의 「자본의 정의와 구성(15.2)」에서 찾을 수 있음.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며, 주로로부터의 납입자본에 기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하고 기업의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을 가산하고, 기업활동으로 부터의 손실 및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주주지분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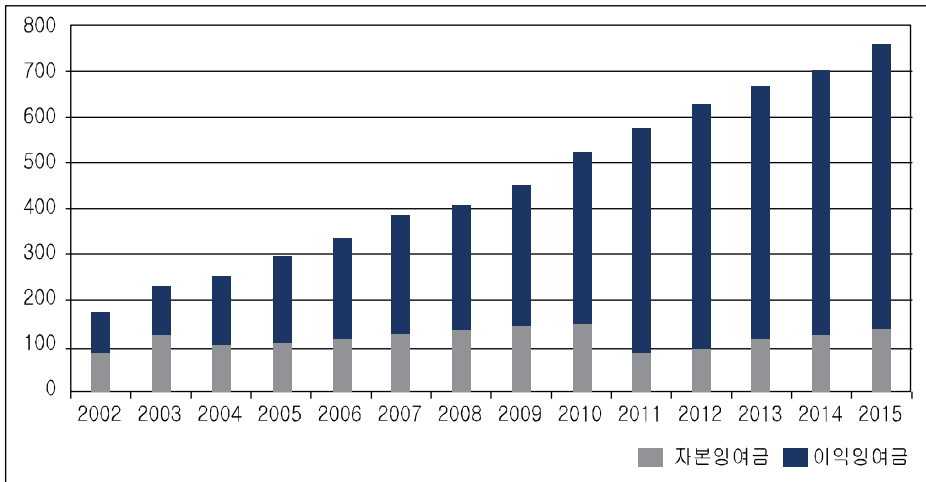
○ 위 개념을 적용한다면 사내유보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합 또는 이익잉여금을 의미. 그러나 여전히 측정기준(기간, 특정시점)에 따라 다르고, 하위 계정항목 포함 여부 등 세부 항목의 조정을 통해 다양한 정의가 가능.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사내유보금의 액수에 차이가 존재함.

- 1)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³⁾에서 이용되는 사내유보금은 매해 발생하는 유량(flow)의 개념으로 당기에 처분된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 처분액,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의 합으로 정의함.
- 2) 언론 또는 연구자료에서 수치로 제시되고 있는 일반적인 저장(stock)의 사내유보금은 특정시점의 잉여금 전체에 해당. 유가증권상장사(비금융)의 개별 재무제표상 2015년 전체 잉여금은 759조 9,523억 원임.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1:4.65의 비율로 각각 134조 5,021억 원, 625조 4,502억 원으로 나타남.

- 1)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포함하는 2014. 10. 16. 정부발의안 이후에도 사내유보금에 기반하여 19대에 4건이 의원발의되었으며 기간만료로 폐지됨. 2016년 6월 개원한 20대 국회에서도 사내유보금이 지목된 발의안이 2건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20대 국회 최초의 발의안(의안번호 2000081)에서는 “투자과 고용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사내유보금이 753조 6천억 원이 쌓인 반면”으로 사내유보금을 명시함.
-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존재하지 않음.
- 3) 기업경영분석(2015). 한국은행은 사내유보금을 명시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사내유보율을 발표하여 당기의 경영성과 중 사내유보된 비율을 나타냄.

〈그림 2〉 KOSPI 상장 비금융 기업의 유보금의 연도별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KISVALUE DB

- 자본거래와 관련된 재무활동을 통해 발생한 자본잉여금을 포함하기 보다는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이익잉여금만을 사내유보금으로 보는 것이 적합⁴⁾

○ 국회예산정책처(2014)⁵⁾의 지적대로 실물투자를 위한 준비금인 이익잉여금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 위의 연도별 추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자본잉여금은 시간에 따라 변동의 폭이 크지 않음. 또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서도 유량개념이나 이익잉여금만을 포함하고 있음.

○ 상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본잉여금은 배당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배당대상금액으로 보기 어려움.⁶⁾

○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의 구분방법에 차이가 존재. 과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잉여금이 별도의 계정으로 존재하는데 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구성요소만으로 구성되어 자본잉여금은 납입자본에 포함됨. 국제비교의 용이성을 위해서도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으로 한정할 필요

4) 이후 본 보고서에서는 이익잉여금과 사내유보금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며 자본잉여금을 포괄할 경우에는 전체 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합으로 표시

5) 국회예산정책처(2014). "NABO 경제동향 & 이슈", 2014년 7/8월호

6) 이익잉여금에서 법정적립금 역시 배당의 대상이 되지 못하나 국제비교에 있어서 구분이 어려우므로 이익잉여금 전체를 포함

〈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구성〉

기업의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뜻함. 자본구조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구성요소로 구분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본의 개별항목에 대한 구체적 예시나 설명이 없음)

자본항목	구성
납입자본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기주식, 기타

일반기업회계기준

자본항목	구성
자본금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이익
자본조정	(차감)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가산) 주식선택권, 미교부주식배당금
기타포괄손익	재평가잉여금,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등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리결손금

출처: 손성규·이호영(2014)⁷⁾의 표 인용

□ **순이익을 초과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내유보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사내유보금과 투자는 1:1로 대칭되는 개념이 아님.**

- 사내유보금은 축적되므로, 기업의 이익이 발생하는 활동이 지속되면 매년 증가하며 순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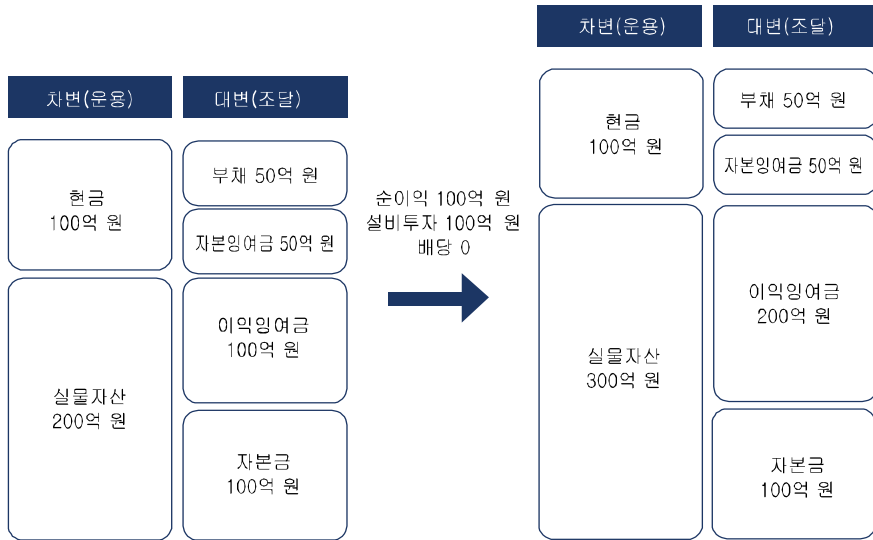
○ 사내유보금의 증가는 기업의 수익으로 인한 필연적 결과이고, 자본으로 편입되지 않는 한 과거의 유보금에 축적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

○ 사내유보금의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하거나 배당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음.

- 사내유보금은 현금, 지분투자, 실물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투자와 사내유보금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음.

7) 손성규·이호영(2014), "IFRS 회계원리-경영의사결정의 도구", 법문사

〈그림 3〉 투자(실물자산) 증가에도 유보금이 증가하는 예



- 자산의 형성은 이익잉여금이 속한 자본 외에도 부채를 통해 조달할 수 있으므로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형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유보금의 증가가 투자의 감소로 단언할 수 없음.
- 개인의 연봉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누적한 금액의 합을 개인의 유보금이라고 한다면, 10년 후 누적된 유보금이 모두 개인의 현금 및 예금으로 존재하지 않고 주택, 주식, 토지, 전자제품으로의 투자를 포괄함.

- 사내유보금 과세의 국제 입법례에 있어서도 주주의 인위적인 배당의 이연을 통한 소득세 회피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이용되고 있음.

- 사내유보금 과세의 대표적 예로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의 구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를 들 수 있음. 과소배당으로 인한 필요 이상의 높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됨.⁸⁾ 기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납부 이후의 순이익에서 배당을 제외한 금액이 누적되므로 사내유보금 과세는 추가 과세임.

-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배당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은 개념상으로도 예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8) 자세한 내용은 김윤경(2014),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KERI Brief 14-08, 한국경제연구원 참조

〈표 1〉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제도의 국가 비교

	미국	일본	한국 (구 법인세법 기준)	한국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목적	주주의 배당소득세 회피를 방지하여 과세의 형평성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순순환유도
대상법인	비공개, 공개법인 (실질적으로는 비공개법인만을 대상)	동족회사	비상장법인으로 자기자본 100억 원 이상인 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중소기업제외)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과세대상 금액	조정소득-배당공제-유보 이익공제	유보금액 - 유보공제액 (기초공제액으로 네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금액)	유보소득-적정유보소득	A. 당기소득×80%-(투자+ 임금증가+배당액 등) B. 당기소득×30%-(임금 증가+배당액 등)
세율	15%	3천만 엔 이하: 10% 3천만 엔~1억 엔: 15% 1억 엔 초과: 20%	15%	10%
특징	- 자의성을 인정 - 탈세목적만을 징벌적 과세 - 법원이 최종판단	- 동족회사에만 적용 - 변협과 세무사 협의 폐지 제안(2005)	- 폐지(2001) - 배당실효성이 없음 - 대규모기업집단 불공평조세	- 세계최초의 세제(3년 한시법) - 상장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주: 김윤경(2014)의 표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업데이트하여 보완

4. 사내유보금의 이해: 기업나이 및 국가별 비교

가. 기업나이에 따른 비교

□ 수익성이 있는 영업활동이 지속된다면 기업의 생존연수에 따라 이익잉여금은 증가함.⁹⁾

- 기업의 이익이 발생한다면 자본편입 또는 순이익을 초과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익잉여금은 축적되므로 기업의 생존연수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 S&P Capital IQ DB를 이용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 비금융기업(2016년 6월 20일 기준, 연결재무제표)의 2015년 결산기준 이익잉여금을 기업의 생

존연수 즉 나이로 구분하여 비교.. 기업 창업연도의 결측치는 나이스신용평가의 KIS-LINE으로 보완

9) 기업의 이익과 배당의 연도별 변화 등을 반영하여야 하나 본 논의는 이익잉여금의 자연적 증가를 보이기 위하여 기업연도만으로 구분

〈표 2〉 기업 나이별 사내유보금 추이

(단위: 원)

기업나이	기업수	이익잉여금 합	평균	증양값
0~10	110	7조 6,052억	691억	256억
11~20	484	44조 6,181억	922억	229억
21~30	300	47조 435억	1,568억	283억
31~50	546	290조 3,369억	5,318억	571억
51+	286	392조 6,842억	1조 3,730억	1,048억
전체	1,726	782조 2,881억	4,532억	388억

자료: S&P Capital IQ 이용하여 계산

- 창업 이후 10년간 경영활동을 한 기업의 평균 이익 잉여금은 691억 원에 불과하나, 50년 이상 기업은 1조 3,7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이익잉여금은 기업나이에 따라 증가. 증양값으로는 0~10년 기업이 11~20년 기업 보다 증양값이 크게 나타났으나, 이후 구간에서는 기업의 생존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이익잉여금이 증가함.
- 30년을 기점으로 기업의 이익잉여금이 급증. 21~30년 지속 기업의 평균과 증양값이 각각 1,568억과 283억인데 비해 31~50년 지속 기업은 5,318억과 571억, 51년 이상 지속기업은 1조 3,730억과 1,048억을 보임. 이익잉여금의 증가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냄.

나. 국가별 시총 500대 기업 비교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4개국의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 비교를 통해 사내유보금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음.

- 2015년 12월 31일 기준 각국의 시가총액기준 500대 기업¹⁰⁾을 통해 국가별 사내유보금을 비교하고자 함.

- 시총 500대 기업의 이익잉여금 합계액은 미국 4조 942억 달러였고, 일본 1조 4,957억 달러, 중국

7,817억 달러, 한국 6,058억 달러 순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이익잉여금 증가율을 비교하면, 일본 13.6%, 중국 4.3%, 미국 1.9%, 한국 1.1%를 보임. 실적 반등에 성공한 일본 기업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의 느려진 증가속도는 배당의 증가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동시에 이익의 감소로도 해석할 수 있음.

- 이익잉여금 대비 기업현금¹¹⁾의 비중을 단순비교하였을 때, 한국은 40.8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¹²⁾과 같이 이익잉여금이 기업현금과 같지 않음.

- 상당히 큰 사내유보금의 규모를 가진 미국, 일본, 중국에서 이익잉여금에 대한 투자와 고용 논쟁은 찾기 어려우며 이는 국내의 이례적 상황.

10) 기업의 연속성을 위해 2010년 이후 계속상장 기업으로서 재무제표가 존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11) 기업현금은 가장 광의의 개념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단기투자증권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사용함.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으로 한 정할 경우 금액은 축소됨.

12) 기업현금 등의 자산은 자본 및 부채로 조달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이익잉여금 대비 현금 비교를 통해 이익잉여금이 기업현금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물자산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함.

〈표 3〉 국가별 500대 기업 이익잉여금 비교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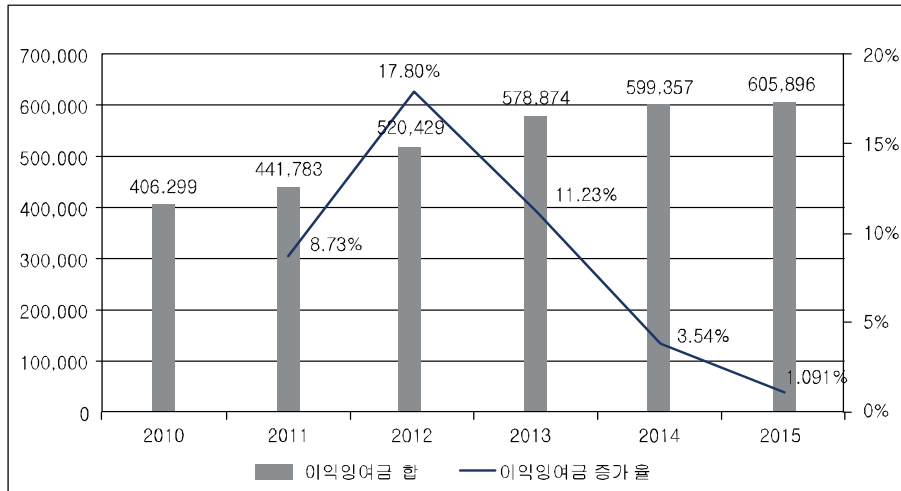
구 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이익잉여금 합	6,058억 9,560만	4조 942억 6,480만	7,817억 2,860만	1조 4,957억 5,460만
전년대비 증가율	1.09%	1.93%	4.28%	13.60%
기업현금	2,472억 3,810만	1조 3,106억 2,510만	5,353억 2,180만	6,606억 1,730만
이익잉여금 대비 현금비율	40.81%	32.01%	68.48%	44.17%

자료: S&P Capital IQ 이용하여 계산

주: 기업현금=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및 단기투자자산의 총합

〈그림 4〉 한국 시총 500대 기업의 이익잉여금 변화 추이

(단위: 백만달러, 퍼센트)



자료: S&P Capital IQ 이용하여 계산

□ 투자와 대비되는 개념은 사내유보금이 아닌 기업내부의 현금으로 볼 수 있으나, 국제적으로도 기업현금 보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미국의 500대 기업이 보유한 현금 규모는 1조 3,106억 달러, 일본 6,606억 달러, 중국 5353억 달러로 각각 우리나라 2,472억 달러의 5.3배, 2.7배, 2.2배를 보유하고 있음.

○ 기업현금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단기투자자산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

- 위 기업의 총자산 대비 현금의 비교(중앙값)에서 중국 15.98%, 일본 14.68%, 한국 12.19%, 미국 7.26% 순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국인 일본, 중국에 비해 자산대비 높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김윤경·신현한·김소연(2015)¹³⁾은 기준연도인 2000년대 초반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보임.

○ 국제적으로도 기업현금의 증가는 주목의 대상임.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한 기업의 예비적 동기에 의한 현금보유가 급증함. 최근 발표된 호주 은행 보고서(2016)¹⁴⁾에서 국내기업의 현금비율이 OECD 국가 중 14위를 차지하였고, 보고서는 높은 현금비율이 성장 및 투자 기회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제시

○ 기업의 현금보유는 M&A 자금조달의 주요 재원으로 이용되므로 현재의 기업현금을 쌓아놓은 돈으로 비판만 하기도 어려움. 마이크로소프트는 2015년 연말 기준 963억 달러의 현금을 바탕으로 최근 링크드인 인수 등 적극적인 인수합병에 참여하고 있음. 이외에도 알파벳, 애플, 삼성 등 높은 현금 보유 기업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나타남.

- 기업 현금보유에 대한 연구와 함께 투자 인센티브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13) 김윤경·신현한·김소연(2015), "기업 현금보유 분석-2000년대 성장 및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보고서 14-09, 한국경제연구원

14) 연합뉴스, "한국기업 자산중 현금비율 OECD 14위...이스라엘 1위", 2016년 5월 2일자 참조

5. 정리 및 시사점

□ 정책제언의 근거로 이용되기 전에 사내유보금의 의미와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투자 감소를 뜻한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사내유보금을 무조건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

- 입법의 질적 향상과 올바른 정책대안의 마련을 위해서도 사내유보금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임.

□ 축적되어 증가하는 사내유보금의 개념적 의미와 국제비교의 기준 측면에서 이익잉여금을 사내유보금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함.

- 배당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유보된 이익은 당기에 국한되지 않고 매년 누적되어 증가하므로 회계 계정상 잉여금을 의미하며, 상법상 특별한 사유 외에는 배당이 되지 않는 자본잉여금을 배제한 이익잉여금으로 보아야 함.

- 회계기준에 있어서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본잉여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비교의 용이성을 위해서도 이익잉여금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

□ 사내유보를 대신하는 기업의 선택은 배당으로서 사내유보와 투자는 1:1의 개념으로 성립되지 않음.

- 이익잉여금의 감소는 자본편입이나 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능하고, 이익잉여금의 증가율 감소는 전년대비 이익대비 배당의 증가 또는 이익의 감소를 의미함.

-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에 대한 단기적 기업의 대응은 배당의 증가일 수 있음. 선순환적 인센티브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성장동력 강화 및 발굴이 가능하게 하는 기업환경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유동성인 기업 현금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위험이 실현된 기업의 구조조정에서 기업의 생존과 현금에 직접적 관련이 존재함. 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내부재원인 현금의 의존도는 증가함. 또한 사전적 사업재편의 대표적 방법인 M&A와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투자는 외부차입보다는 현금보유의 증가를 선택하게 함.

-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자본구조 또는 자산포트폴리오의 직접적 개입보다는 자율적인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이 선행되어야 함.

□ 사내유보금을 대신하는 새로운 용어 개발을 통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할 필요

- 학계의 사내유보금의 인식개선과 정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 내부의 유보된, 쌓아놓은 돈이라는 오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대안을 모색하여야 함.

- 수치로 제시할 수 있도록 회계용어대로 이익잉여금 또는 누적개념을 강조한 이익잉여금 누적액을 사용할 수 있음. 기업이 스스로 창출한 재투자 및 배당준비금의 특성을 반영하여 창출자본이나 세후재투자자본으로의 변경도 고려할 수 있음.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6년 9월 19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